2023.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

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 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'20. 6월부터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함

□ '23. 6월 취업심사 결과

○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'23. 6. 29. 제158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3건을 심사하여 1건의 '취업 가능', 1건의 '취업 승인'과 1건의 '업무취급 승인'을 결정함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】

구분	주요 내용					
취업가능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					
취업제한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					
취업승인	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					
취업불승인	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*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					

붙 임 2023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

연 번	퇴직 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	74 H U O
	소속	직위(직급)	퇴직일	업체(직위)	일자	결과	결정 사유
1	창원시	지방기술서기관	2022년 12월	㈜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	2023년 6월	취업 가능	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없음
2	밀양시	지방서기관	2022년 12월	밀양시 시설관리공단 (상임이사)	2023년 5월	취업 승인	영 제34조제3항제9호
3	김해시	지방서기관	2022년 12월	밀양시 시설관리공단 (상임이사)	2023년 4월	업무취급 승인	법 제18조의2제3항

참 고 결정사유 관련 법령

□ 업무관련성 판단근거

<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>

-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③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④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⑤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⑥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⑦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⑧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)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
□ 취업승인사유

<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>

-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(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)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-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①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(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)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③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